

I.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 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지난 '98년 12월 21일 제2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.

□ 폐지이유

- 동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·군수에 위임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,
-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(에너지 관리자 채용신고) 및 제45조(사업의 폐지신고 등)의 규정이 '97. 8. 22일자로 삭제되었고
- '98. 4. 1일자로 동법 제59조(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채용신고 등)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어
- 현행 조례로 정한 기준은 상위법령과 상치할 뿐아니라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임.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'96. 3. 1일 시승격이전에 제정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근거법령에 따라 폐지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동 조례의 폐지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이 최저 20~30만원이던 것이 20~5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안별 위반횟수의 증가에 따라 최고 50만원이 100만원으로 100%인상되는 경우도 있어 에너지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보아지나,
- 지난 '96. 3. 1일 이후 동 조례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하면 그 부담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.